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6호로 2021년 11월 15일 최봉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안 제5조)

다.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환수 (안 제8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1. ~ 11. 15. / 5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구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총 1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구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이 다른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서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구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정비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로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 세부적인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과목의 선정, 강사 위촉 및 해촉,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여 지역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